

# (재)군위문화관광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

군위군의 지역문화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(재)군위문화관광재단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3년 8월 14일

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## 1. 모집분야 및 인원

| 근무형태 | 직위             | 인원 | 임기  | 주요직무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|---|
| 비상근  | 임원<br>(선임직 이사) | 4명 | 2년<br>(2023. 10. 1. ~<br>2025. 9. 30.)<br>(정관 규정에 따라<br>연임가능) | ○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 등  |
|      | 임원<br>(선임직 감사) | 1명 |   | ○ 재단 재산상황에 관한 감사<br>○ 재단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감사<br>○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<br>있음을 발견한 때 시정요구 및 보고<br>○ 이사회 출석 및 의견개진 |

## 2. 보수

○ 무보수(비상근) ※이사회 참석 시 참여수당 등 지급

## 3. 응모자격

| 직위          | 응모 자격   |
|-------------|---|
| 이사<br>(비상임) | ○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문제해결 능력, 조직관리 능력, 의사소통 능력, 협상능력,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 일반적인 능력을 보유한 사람  |
| 감사<br>(비상임) | ○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문제해결 능력, 조직관리 능력, 의사소통 능력, 협상능력,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 일반적인 능력을 보유한 사람<br>○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|

※ 자격제한 :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1. 미성년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 4. 원서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8. 15.(화) 09:00 ~ 8. 29.(화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방문, 등기우편, 전자메일 중 선택하여 접수
  - 방문접수 : 평일 09:00~18:00.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  - 등기우편접수 :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. (우선으로 접수확인 필)
  - 전자메일접수 :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. (우선으로 접수확인 필)
    - ※ 전자메일 주소 : merhen@gunwi3964.org
    - ※ 전자메일 접수시 원본 원서는 추후 징구
- 접수처 : (43150)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일연테마로 100  
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 
(군위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김세환 ☎054-380-3901)

#### 5. 제출서류

- 임원응시지원서 1부(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부착)
- 자기소개서 1부
- 직무수행계획서 1부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부패방지(취업제한 관련) 확인서 1부
- 이해관계 유무 확인서
-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(재직)증명서, 관련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응모자격 확인 필요서류
  - ※ 각 제출서류 소정 양식은 군위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unwi.go.kr>) 고시 공고 및 군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(<http://www.gunwi3964.org>) 알림마당에서 내려받아 사용

## 6. 심사방법 및 결과 발표

- 서류전형(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)
  -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
- 심사항목 및 배점 : 총100점
  - 비상임 이사 : 전문성(20점), 조직친화력(20점), 청렴성/윤리관(20점), 리더십(20점), 운영능력(20점)
  - 비상임 감사 : 감사로서의 자질과 회계분야 지식(25점), 재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(25점),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감사능력(25점), 기업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감사능력(25점)
- 임원후보자 결정
  - 위원별 평가점수 100점 만점기준 위원별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.
    - ※ 평가 공정성을 위해 최고 및 최저점수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가능
  - 동점자의 경우 추천위원회 투표로서 순위 결정
- 임원선임 :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며, 순위순수가 최종 임용여부 결정
- 합격자 발표 : 군위군청, 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

## 7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 요청 시 반환하여 드리며, 반환청구기간(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)이 지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.
- 반환청구기간 : 최종 합격자 공고일 기준 30일 이내
- 반환방법 : 양식 제출,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
- 지원서 허위작성, 부정행위 또는 증빙서류 위·변조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등에 따라 재단이 정한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필요 시 법적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응모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.
- 재단의 임원은 지원사업의 도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단의 지원사업 신청 및 심의 위원 참여가 제한됩니다.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추가모집공고 또는 재공고를 실시함
  - 추가모집 공고
    - 최초 공개모집에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응모자 수가 2배수에 미달할 경우
      - ※ 단, 추가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2배수에 미달할 경우 기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
  - 재모집 공고
    -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
    - 임명권자(군위군수)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(경영기획팀 ☎054-380-3901, 390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※ 응시원서 작성요령

1.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응시원서 작성시 응모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 또는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3. [응시원서] 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십시오
  - 응모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(임원추천위원회에서 기재)
  - 전화·휴대폰 : 상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

※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모자 책임입니다.

## < 주의사항 >

1. 접수기간은 2023. 8. 15.(화) 09:00 ~ 8. 29.(화) 18:00 도착분까지만 인정합니다.
2. 응모 지원서는 방문,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 중 선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※ 이메일 주소 : merhen@gunwi3964.org
3. 제출한 응모 지원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.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(경영기획팀 ☎054-380-3901, 390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직무수행계획서

|     |  |      |  |
|-----|--|------|--|
| 성 명 |  | 생년월일 |  |
| 주 소 |  |      |  |

## 직무수행 계획

※ 군위문화관광재단의 비전과 전략,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,  
표지를 제외하고 A4용지 2~3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.  
(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 가능)

2023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지원자 :

(서명)





# 부패방지(취업제한 관련) 확인서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에 ○ 표시>

1. 공직자로 재직할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(여, 부)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  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
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---(여, 부)
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(여, 부)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2023년 월 일

지 원 자 :

(서명)

